

제2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3. 6. 13.)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박혜진]

목 차

I. 검토경과	1
II. 제출근거	1
III. 세입·세출예산 결산 총괄	1
1. 결산총괄	1
2. 세입결산	2
3. 세출결산	2
4. 세출·세입처리상황	2
5. 일반 회계 세입결산	3
6. 일반회계 세출결산	3
7.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5
8.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	6
9. 계속비 결산	8
10. 예비비 지출	10
11. 다음연도 이월사업	11
IV. 기금결산	13
V. 채권액결산	14
VI. 채무액결산	15
VII. 보조금결산	15
VIII. 기타의견	16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제출일자 : 2023. 6. 1.
- 제출자 : 거창군수
- 회부일자 : 2023. 6. 2.
- 의안번호 :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86호)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87호)

II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50조
-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조
-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III 세입 · 세출예산 결산 총괄

1. 결산총괄(결산서 p25)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결산	세출결산	잉여금 (이월액)
합 계	977,177	983,848	763,844	220,004
일반회계	896,339	899,606	704,981	194,625
특별회계	80,838	84,242	58,863	25,379

2. 세입결산(결산서 p31)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계	977,177	988,637	983,848	869	3,920	100.7	99.5
일반회계	896,339	903,709	899,606	712	3,391	100.4	99.5
특별회계	80,838	84,928	84,242	157	529	103.7	98.7

3. 세출결산(결산서 p35)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보조금 반납액 (F)	집행잔액 G=C-D-E-F
계	863,587	113,590	977,177	763,844	167,272	6,361	39,700
일반회계	793,091	103,248	896,339	704,981	151,405	6,321	33,632
특별회계	70,496	10,342	80,838	58,863	15,867	40	6,068

4. 세입·세출 처리상황(결산서 p38)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 결산액 (A)	세출 결산액 (B)	결산상 잉여금 (A-B)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반납금	순세 잉여금
계	983,848	763,844	220,004	88,857	32,068	40,946	7,827	50,306
일반회계	899,606	704,981	194,625	80,747	29,496	35,765	7,778	40,839
특별회계	84,242	58,863	25,379	8,110	2,572	5,181	49	9,467

5. 일반 회계 세입결산(결산서 p44)

(단위 : 백만원)

과 목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896,339	903,709	899,606	712	3,391
지방세 수입	39,193	41,355	39,744	255	1,356
세 외 수 입	17,584	25,781	23,289	457	2,035
경세외수입	8,022	11,312	11,235	48	29
임세외수입	8,369	12,309	10,296	360	1,65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93	2,160	1,758	49	353
지방교부세	383,817	385,677	385,677	-	-
조정교부금등	41,237	41,237	41,237	-	-
보조금	226,470	221,159	221,159	-	-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88,038	188,500	188,500	-	-

6. 일반회계 세출결산(결산서 p81)

○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계	896,339	704,981	151,405	6,321	33,632
의회운영위원회	1,069	880	-	-	189
총무위원회	419,222	350,167	48,192	3,185	17,678
산업건설위원회	476,048	353,934	103,213	3,136	15,765

○ 부서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합	계	420,291	351,047	48,192	3,185	17,867
의	회 사 무 과	1,069	880	-	-	189
총 무 위원회	소 계	419,222	350,167	48,192	3,185	17,678
	기획예산담당관	55,184	52,891	126	1	2,166
	행정과	75,538	67,213	20	64	8,241
	미래전략과	20,633	15,493	4,858	-	282
	인구교육과	16,877	12,745	2,769	109	1,254
	민원소통과	1,889	1,655	-	13	221
	재무과	12,357	5,286	6,745	2	324
	문화관광과	18,842	16,178	2,057	30	577
	복지정책과	32,145	30,791	150	536	668
	행복나눔과	126,035	108,408	15,228	1,079	1,320
	보건소	13,395	11,110	17	1,332	936
	보건정책과	10,442	8,402	17	1,242	781
	건강증진과	2,953	2,708	-	90	155
	체육시설사업소	30,883	13,677	15,880	19	1,307
	읍	면	15,444	14,720	342	-

7.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 입(결산서 p217, 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

(단위 : 백만원)

과 목 \ 구 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A)	수 납 액 (B)	불 납 결손액(C)	미수납액 (D=A-B-C)
계	80,838	84,928	84,242	157	529
공 기 업	61,611	63,623	63,418	0	205
의 료 급 여 기 금	1,068	1,035	1,035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0	30	30	0	0
주 차 장 관 리	500	1,132	651	157	324
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	6,185	6,263	6,263	0	0
수 질 개 선	6,368	6,301	6,301	0	0
댐주변지역지원사업	782	782	782	0	0
농 업 발 전 자 금	4,294	5,762	5,762	0	0

○ 세 출(결산서 p217, 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B)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D)	집행잔액 (F=A-B-C-D)
계	80,838	58,863	15,867	40	6,068
공 기 업	61,611	47,104	10,112	-	4,395
의 료 급 여 기 금	1,068	994	0	16	5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0	30	0	0	0
주 차 장 관 리	500	270	0	0	230
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	6,185	973	5,200	0	12
수 질 개 선	6,368	5,701	555	24	88
댐주변지역지원사업	782	772	0	0	10
농 업 발 전 자 금	4,294	3,019	0	0	1,275

8.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결산서 p295)

이 용(일반회계) : 해당사항 없음(결산서 p298)

전 용(일반회계) - 결산서 p299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 용 금 액		비 고
		감 액	증 액	
21건	11,249	654	654	

이 체(일반회계) - 해당사항 없음(결산서 p301)

검 토 의 견

전 용(일반회계)

- 예산 집행은 당초 예산 편성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적법하지만 여건 변화, 사업의 일부변경 등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경우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에 따라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에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산의 전용을 실시하는 것은 당초 적정하게 편성되었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에 그쳐야 하며,
-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가급적 추경을 통하여 증·감 조정 후 집행할 것을 결산 검사에서도 권고되었음.
- 21건의 전용 사업 대부분이 사업의 필요성 등을 위해서 적절하게 전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차후 전 부서에서는 예산의 전용 시 상기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람.

9. 계속비 결산(3권-결산서 부속서류 p125)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당 해 연 도 집 행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합계(15건)	56,423	11,520	44,817	86
노인요양시설 확충(신축)사업	15,624	945	14,679	0
문화관광자원개발-스피드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전환사업)	5,715	2,124	3,591	0
빼재 익스트림 레저모험타운 조성사업(전환)	4,169	1,108	3,061	0
백두대간 거창자연휴양림 조성사업	966	798	168	0
산림레포츠파크 지역특화형 숲속의집 조성사업(기초계정)	600	0	600	0
힐링랜드 출렁다리 연결 잔도 설치	500	0	500	0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990	652	256	82
기초생활인프라(소규모 용수개발)(전환)	1,988	746	1,238	4
용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전환)	4,000	39	3,961	0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315	67	248	0
신활력플러스사업	5,127	1,072	4,055	0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	6,330	3,870	2,460	0
기초생활거점육성(가북면)	2,556	31	2,525	0
거창읍 동산마을 농촌공간정비사업	2,500	0	2,500	0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5,043	68	4,975	0

검 토 의 견

-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며,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 15건의 계속사업비 이월 내역은 타당함.

10. 예비비 지출(결산서 p303)

(단위 : 백만원)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조 직	단 위	세부사업				
합 계			7,485	6,971	41	473
기 획 예 산 담 당 관	군정방향기획	소상공인 지원	352	144	0	208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	제3차 거창형재난지원금 기간제근로자보수	32	31	0	1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	제3차 거창형재난지원금 홍보물 제작	12	10	0	2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	제3차 거창형재난지원금 우편료	15	15	0	0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	제3차 거창형재난지원금 전산시스템구축	20	19	0	1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	제3차 거창형재난지원금 지급소요액	6,060	5,891	0	169
복지정책과	재 해 구 호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	50	50	0	0
복지정책과	재 해 구 호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100	16	0	84
복지정책과	감염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 키트 한시지원	홍 보 물 품 사 무 용 품	1	1	0	0
복지정책과	감염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 키트 한시지원	신속 항원 검사 키 트 구 입	69	69	0	0
건 설 과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	한발대비 용수개발 장 비 임 차	25	24	0	1
건 설 과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	한발대비 용수개발 관 정 개 발	725	677	41	7
농업기술과	원예특작생산 기 반 조 성	저장양파 출하연기 업	24	24	0	0

검 토 의 견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복지정책과의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등 10건의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위한 사업이며, 건설과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 또한 예측하지 못한 가뭄으로 인한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예비비 집행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11. 다음연도 이월사업(결산서 부속서류 p149)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산현액	이월액	비 고
계	355	488,781	167,273	
명 시 이 월	147	231,910	90,177	일반회계 134건 자산도특 5건 하수도특 8건
사 고 이 월	175	197,472	32,072	일반회계 168건 산업단지 1건 수질개선 2건 상수도특 2건 하수도특 2건
계 속 비 이 월	33	59,399	45,024	일반회계 29건 산업단지 1건 하수도특 3건

※ 지난해 이월사업 : 281건, 103,246백만원

검 토 의 견

- 예산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사업기간 미도래, 보상지연, 설계변경, 행정절차 지연, 기본계획 미확정 등의 사유로 이월됨.
- 이월 사유와 이월 금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사례의 경우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집행을 위한 효율적인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 계속비 지원사업, 특별교부금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의 이행, 보상절차 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당해 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IV 기금결산(결산서 p325)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나)=㉡-㉣	조 성 액(㉡)	사 용 액(㉣)	
계(8종)	149,791	△1,168	40,466	41,634	148,623
식 품 진 흥 기 금	135	△1	84	85	134
중소기업육성기금	6,176	△500	12	512	5,676
사 회 복 지 기 금	2,544	△79	26	105	2,465
재 난 관 리 기 금	3,374	26	837	811	3,400
아림예술제진흥기금	505	△3	5	8	502
옥외광고발전기금	368	210	313	103	578
체 육 진 흥 기 금	1,104	△1	9	10	1,10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35,585	△820	39,180	40,000	134,765

검 토 의 견

- 기금은 복잡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함.
- 세입재원 중 보통교부세,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의 지속적인 증가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안정화 기금에 편성하여 세입이 부족한 때에 이를 충당하여 사용함으로써 연도 간 재정 불균형 해소 및 군 재정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검토됨.

- 기금은 조성보다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집행이 미미하므로 향후 목적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함.

V 채권액결산(결산서 P478)

- 회계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발 생 액	당 해 연 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잔 액
합 계	4,307	3,028	3,075	4,260
일반회계	3,089	28	390	2,727
특별회계	1,208	3,000	2,685	1,523
농업발전기금	1,208	3,000	2,685	1,523
기 금	10	0	0	10
사회복지기금	10	0	0	10

※ 채권액은 원금 + 이자 기준임.

검 토 의 견

- 전년도 말 잔액은 4,307백만원으로 당해 연도에 3,028백만원이 발생하고, 3,075백만원 소멸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4,260백만원임
- 채권 종류별 현황을 보면 기금채권 10백만원, 보증금채권 143백만원, 융자금 채권 4,082백만원으로 보증금채권은 사무실 임대, 콘도 회원권이고, 융자금채권은 공무원 학자대여금, 주택융자등임.

VI 채무액결산(결산서 p377)

- 거창군의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 0원임.
- 2018년도 이후로 채무가 0원으로 건전 재정 기초를 유지하고 있음.

VII 보조금결산(본예산)(결산서 부속서류 p379)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계	377,621 (143,469)	370,872 (143,307)	298,171 (102,013)	60,927 (35,848)	12,812 (5,522)	
일반회계	371,148 (143,467)	364,465 (143,305)	292,363 (102,013)	60,377 (35,848)	12,763 (5,520)	
특별회계	발전소	30	30	30	0	0
	주변지역지원사업	(0)	(0)	(0)	(0)	(0)
	의료급여기금	230 (0)	230 (0)	214 (0)	0 (0)	16 (0)
	수질개선	6,213 (2)	6,147 (2)	5,564 (0)	550 (0)	33 (2)

※ ()내서는 군비 부담액임.

검 토 의 견

- 2022년도 보조금 수령액은 370,872백만원으로, 예산액 377,621백만원이고, 집행액은 298,171백만원으로 60,927백만원이 이월되었음

- 일반회계 준비부담액은 143,467백만원으로 총 보조사업비(수령액)에 대비하여 38.6%에 해당됨.

VIII 기타 검토의견

- 결산은 사후적인 관계로 집행된 예산의 내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효과는 없음.
- 결산은 1회계연도 동안 운영된 예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사가 완료되어야 그 운영이 종결되므로 비로소 예산운영 주체에 대한 책임이 정치적, 행정적으로 종료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결산심사는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을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의 예산집행 및 편성을 위한 지도, 감독,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
- 재정 운용 기본방향은 재정 운용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성과 창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 최대 확보,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성 강화,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와 안전 환경 조성으로,
- 계속사업은 완공 위주로 신규사업은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하고, 전략적 예산확보와 효율적 재원투입,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군정발전 전략추진, 지역경제 살리는 효율적인 재정회계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음.
- 2022년도 총 세입액은 983,848백만원, 총 세출액은 763,843백만원으로 잉여금은 220,004백만원임. 세입대비 22.3%가 집행

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것은 재정 계획과 재원 배분에 다소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할 것임.

- 총 세입은 983,84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4,74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385,678백만원(39.2%)이고, 보조금 227,586백만원(23.1%), 조정교부금 41,237백만원(4.2%), 지방세는 39,744백만원(4.0%), 세외수입은 32,368백만원(3.3%)으로
- 우리군 재정은 자체재원(7.3%)보다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66.5%)의 비율이 높은 편임.
- 세출은 763,84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2,870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능별로는 농림해양수산 156,073백만원, 사회복지 147,147백만원, 일반공공행정 88,333백만원 순이며,
- 전년대비 가장 많이 금액이 증가된 것은 보건, 농림해양수산분야이며, 교육분야는 전년 대비 29%가 감소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134,765백만원이 적립되어있음

-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의 사업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재검토를 해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나머지 예산을 최소화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특정 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말 현재 기금 조성액으로 148,623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0,466백만원임.
- 거창군 기금은 최근 5년간 평균 83%증가하였는데 이는 재난 관리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증가에 기인한 것임.
- 당해연도 조성액은 40,466백만원이고, 사용액은 41,634백만원으로 기금조성에 비해 사용액이 1,16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사용하였기 때문임.
-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특정 자금을 보유·운용하여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2022년 일반회계 사업에 예산불용액이 과다발생분은 사업별 집행계획을 자세히 검토하여 추경예산에 정리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추진되어야 하고, 보조사업비 반환금도 지난해에 이어 증가 추세여서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행정사료관 건립 사업 등 26건 529백만원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하면서 추가경정 예산서를 작성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예산삭감조치 및 이월예산으로 사업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함.
- 지방세 결손처분이 전체 589건 711백만원임,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토지 공매 배분금액 부족, 시효완성정리 등의 이유로 정리 보류하였으나 무재산 이유가 대부분으로 징수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함.
- 202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111백만원이 증가한 3,715백만원으로, 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징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중 납세태만이 64.9%를 차지함.
- 징수불능 분은 과감히 결손처분 조치하여 행정력 낭비 요인을 줄이고, 납세태만 등에 대하여는 납세의무 이행과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한 강력한 징수 대책이 요구됨.